

악천후 작업 관련 규정

一.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노조는 《방서강온(防暑降温) 조치잠정시행방법》(<60>위방선자 제207호)를 수정하고, 2012년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위생청(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총노조,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국에 인쇄 배포했다.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 노동보호업무를 강화하고, 노동자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고온작업 및 고온날씨에서 노동자 작업을 배정하는 기업, 사업체와 개별경제조직 등 고용업체에 적용된다.

제3조 고온작업은 기온이 높거나 강렬한 열복사 또는 높은 습기(상대 습도 $\geq 80\%RH$)가 서로 결합된 이상작업조건을 말하며, 습구흑구온도지수(WBGT지수)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작업이다.

고온날씨는 도시급 이상 기상주관부서 소속기상대가 대중에게 발표하는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고온날씨작업은 고용업체가 고온날씨에 노동자를 고온의 자연기상환경에서 작업하도록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 고온작업 WBGT지수측정은 《작업장 물리요인 측정 제7부분: 고온》(GBZ/T189.7)에 따라 시행한다. 고온작업 직업접촉 제한치는 《작업장의 모든 위해요인 직업접촉 제한치 제2부분: 물리요인》(GBZ2.2)에 따라 시행

한다. 고온작업 등급분류는 《작업장 직업병 위해작업 등급분류 제3부분: 고온》(GBZ/T229.3)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확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 노동보호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와 각자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 노동보호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고용업체는 방서강온(防暑降温) 업무제도를 구축, 완성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 노동보호업무를 강화하여 노동자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고용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업체의 방서강온(防暑降温) 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 고용업체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현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공법과 작업공정을 개선하며 양호한 단열, 통풍, 강온조치를 취해 작업장이 국가직업위생표준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고용업체는 다음 고온작업 노동보호조치를 실현해야 한다.

(1) 우선 고온을 통제하는데 유리한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 새로운 설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고온의 위험을 낮추거나 없앤다.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고온위험의 경우 종합적인 통제조치를 취해 국가직업위생표준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고온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설계가 국가직업위생 관련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고온보호시설을 메인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3) 고온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고용업체는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고온 일상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요인 검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4) 고용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위험작업에 접촉하는 노동자에 대해 업무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의 직업건강검진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독보호문서에 보관하여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업체가 부담한다.

(5) 고용업체는 임신한 여직원과 미성년자 직원을 《작업장 직업병 위험작업 등급분류 제3부분: 고온》(GBZ/T229.3)의 3급 이상인 고온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배정해선 안 된다.

제8조 고온날씨에 고용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생산특징과 구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작업시간, 교대작업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고온작업환경에서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늘리고 노동강도를 낮추며 고온 시간대에 실외작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업체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부서 소속기상대가 당일 발표한 일기예보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단 개인재산안전과 대중이익의 필요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일일 최고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당일 실외노천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일일 최고온도가 37℃ 이상, 40℃ 이하일 경우, 고용업체는 하루동안 노동자의 실외노천 누적작업시간을 6시간 이상 배정해선 안 되며, 연속작업시간은 국가규정을 초과해선 안 되고, 최고온도 시간대인 3시간 내에 실외노천작업을 배정해선 안 된다.

3. 일일 최고온도가 35℃ 이상, 37℃ 이하일 경우, 고용업체는 교대휴식 등 방식으로 노동자의 연속작업시간을 줄여야 하며, 실외노천작업 노동자의 야근을 배정해선 안 된다.

(2) 고온날씨가 다가오기 전에 고용업체는 고온날씨작업의 노동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며, 심장, 폐, 뇌혈관질환, 폐결핵, 중추신경계통 질환 및 기타 신체상황이 고온작업환경에 부적합한 노동자에 대해 작업부서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업체가 부담한다.

(3) 고용업체는 임신여성과 미성년자 직원을 35℃ 이상의 고온날씨에 실외노천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33℃ 이상의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배정해선 안 된다.

(4) 고온날씨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시간이 단축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자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해선 안 된다.

제9조 고용업체는 노동자에게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제10조 고용업체는 노동자에게 작업 전 직업위생교육과 작업 중 정기 직업위생교육, 고온보호, 중서(中暑)시 응급조치 등 직업위생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11조 고용업체는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의 노동자에게 충분하고 위생표준에 부합하는 방서강온(防暑降温) 음료 및 필수적인 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방서강온(防暑降温)음료 대신하여 금전을 배포해선 안 된다. 방서강온(防暑降温) 음료는 고온 보조금을 상쇄해선 안 된다.

제12조 고용업체는 고온작업환경에 휴식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휴식장소에는 의자를 만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거나 에어컨 등 방서강온(防暑降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고용업체는 고온 중서(中暑)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구조 연습을 진행해야 하며,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 및 작업조건 등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인원과 충분한 응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노동자에게 중서(中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고용업체는 즉시 구조조치를 취해 고온환경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서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방서강온(防暑降温) 음료를 공급하고 증상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세가 심각한 경우 고용업체는 즉시 의료보건기관으로 보내 치료해야 한다.

제15조 노동자는 고용업체가 합리적으로 조정한 고온날씨 휴식시간 또는 해당 작업장소, 근무처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16조 노조조직 대표노동자는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노동보호사항에 대해 고용업체와 평등하게 협상하고 단체계약 또는 고온작업과 고온날씨 노동보호 특별사항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 노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작업보조금을 받는다.

고용업체가 노동자를 35℃ 이상 고온날씨에 실외노천작업에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온 보조금 표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며 사회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한다.

제18조 직업성 중서(中暑) 진단을 책임지는 의료보건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노동자가 고온작업 또는 고온날씨작업으로 인해 중서(中暑)되어 직업병으로 진단될 경우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20조 노조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업체의 고온작업, 고온날씨 노동보호 조치를 감독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노조조직은 고용업체에 이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업체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고용업체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노조조직은 관련 부서에 제청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독해야 한다.

제21조 고용업체가 직업병 예방 및 안전생산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 신체건강에 위해가 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고용업체에 구조조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가 관련법률법규에 따라 고용업체 및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용업체가 국가노동보장법률, 임금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노동보장권익을 침해할 경우 현급 이상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제22조 각 성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와 노조조직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방법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노조와 함께 해석을 책임진다.

제24조 본 방법에서 “이상” 섭씨(°C)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하” 섭씨(°C)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25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60년 7월 1일 위생부, 노동부, 전국총노조가 연합공포한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은 동시에 폐기된다.

二.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업기업설계 위생표준(GBZ1-2010)》의 방서(防暑), 방한(防寒) 표준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발췌했다.

3.14 고온작업 work(job) under hot environment

기온이 높거나 강렬한 열복사 또는 높은 습기가 서로 결합된 이상작업 조건에서 WBGT지수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작업이다.

3.16 저온작업 work(job) under cold stress

평균기온 $\leq 5^{\circ}\text{C}$ 인 작업이다.

6.2.1 방서(防暑)

6.2.1.1 우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공법, 기술과 원재료, 공법공정의 설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열원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열, 통풍, 강온 등 조치를 취해 고온 직업위험을 없애야 한다.

6.2.1.2 공법, 기술과 원재료에 대해 요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생산공법, 기술, 원재료 특성 및 자연조건에 따라 생산과정의 열과 수증기 방출감소, 열복사원 차단, 통풍강화, 노동시간 감소, 작업방식 개선 등과 같은 공정제어조치와 필요한 조직조치를 취해서 실내와 노천작업장소 WBGT 지수가 GBZ2.2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실내 및 노천작업 WBGT 지수가 표준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실제 접촉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개인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2.1.3 하계 주요 풍향에 따라 고온작업공장의 조향을 설계해서 공장이 맞바람을 형성하거나 자연통풍을 증가시키는 풍압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야 한다. 고온작업 공장 평면배치가 "L"형, "Π"형 또는 "山"형일 경우, 입구 부분은 하계 주요 풍향의 맞바람면에 위치한다.

6.2.1.4 고온작업 공장에는 바람을 피하는 천장창을 설치하고 천장창과 측면창은 개폐와 청소하기 편하도록 한다.

6.2.1.5 공기가 직접 작업장소에 불도록 하계 자연통풍용의 흡기창 하단과 지면의 거리는 >1.2m이 되어선 안 된다. 동계 자연통풍이 필요할 경우, 통풍설계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경제비교를 진행하고 열균형 원칙에 따라 열풍보상시스템 용량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흡기창 하단은 일반적으로 <4m이 되어선 안 된다. <4m일 경우 냉풍이 작업장소로 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1.6 자연통풍 위주인 고온작업 공장은 흡기, 배기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 대열량, 습기, 유해기체가 발생하는 단층 공장의 부대건물이 점용하는 해당 공장 외벽의 길이는 외벽 전체 길이의 30%를 초과해선 안 되고 공장의 맞바람면에 설치해선 안 된다.

6.2.1.7 대열량이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의 경우 평면배치에서 가장 긴쪽을 외벽으로 해야 한다. 주변이 모두 내벽일 경우 실내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1.8 열원은 최대한 공장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열압 위주인 자연통풍을 채택할 경우 열원은 최대한 천장창의 하단에 배치해야 한다. 맞바람 위주인 자연통풍을 채택할 경우 열원은 최대한 하계 주요 풍향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배치한다. 열원 배치는 각종 유효한 단열 및 강온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6.2.1.9 공장 내의 발열설비는 공장 기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조작위치의 하계 주요 풍향의 바람이 부는 방향, 공장 천장창 하단 부위가 적절하다.

6.2.1.10 고온, 강한 열복사 작업은 공법, 급수와 실내 기후요소 등 조건에 따라 워터스크린, 단열벽 등처럼 물탱크 또는 단열효과적인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자가 고온 지면이나 고온 벽면에 자주 머물거나 가까이 갈 경우, 표면 평균온도는 $>40^{\circ}\text{C}$ 이 되어선 안 되고, 순간 최고온도 역시 $>60^{\circ}\text{C}$ 가 되어선 안 된다.

6.2.1.11 고온작업 시간이 비교적 길고, 작업장소의 열환경변수가 위생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강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국부 송풍 강온조치를 취할 경우, 기류에서 작업장소까지 도달하는 풍속통제설계는 다음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물안개가 있는 기류풍속은 $3\text{m/s} \sim 5\text{m/s}$ 이고, 안개방울 직경은 $<100\mu\text{m}$ 이어야 한다.

—— 물안개가 없는 기류풍속, 노동강도 I급 은 $2\text{m/s} \sim 3\text{m/s}$ 에서 통제해야 하고, II급은 $3\text{m/s} \sim 5\text{m/s}$ 에서 통제해야 하며, III급은 $4\text{m/s} \sim 6\text{m/s}$ 에서 통제해야 한다.

b) 시스템 국부 송풍을 설치한 경우, 작업장소의 온도와 평균풍속은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작업장소의 온도와 평균풍속

열복사강도 (W/m ²)	동계		하계	
	온도(°C)	풍속(m/s)	온도(°C)	풍속(m/s)
350~700	20~25	1~2	26~31	1.5~3
701~1400	20~25	1~3	26~30	2~4
1401~2100	18~22	2~3	25~29	3~5
2101~2800	18~22	3~4	24~28	4~6

주1: 경미한 강도의 작업일 경우, 온도는 표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취하는 것이 좋고, 풍속은 비교적 낮은 값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강한 강도의 작업일 경우 온도는 표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취하는 것이 좋고, 풍속은 비교적 높은 값을 취하는 것이 좋다. 중간 강도의 작업일 경우 데이터는 삽입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주2: 하열동냉(夏热冬冷)(또는 동난(冬暖) 지역의 경우 표에서 하계 작업장소의 온도는 2°C를 높일 수 있다.

주3: 국부 송풍 시스템의 공기의 냉각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실외 계산변수, 하계는 실외통풍으로 온도 및 상대습도를 계산해야 한다. 동계는 실외난방으로 온도를 계산해야 한다.

6.2.1.12 공법에서 습도가 주로 요구되는 공기조절공장의 경우 공법에 특수요구가 있거나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습도조건에 따른 공기온도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 공기조절공장 내 각 습도에서의 온도요구(상한값)

상대습도(%)	<55	<65	<75	<85	≥85
온도(°C)	30	29	28	27	26

6.2.1.13 고온작업 공장에는 공장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실은 열원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통풍, 강온, 단열 등 조치를 취해서 온도를 ≤30°C로 해야 한다. 공기조절이 설치된 휴게실 실내기온은 24°C ~ 28°C로 유지해야 한다. 고온작업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경우 관찰(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다.

6.2.1.14 고온공장 다리형 기중기 운전실, 공장내 모니터링실, 조작실, 코크스 공장 코크스 차량 운전실과 같은 특수 고온작업은 양호한 단열조치가 있어야 하고, 열복사 강도는 m2이어야 하며, 실내기온은 >28°C이 되어서 안 된다.

6.2.1.15 작업장소 일일 최고기온이 ≥35°C일 경우 국부 강온과 종합 방서(防暑) 조치를 취하고 고온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6.2.2 방한(防寒)

6.2.2.1 최근 10년간 매년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8°C인 달이 3개월 이상인 지역에는 중앙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개월인 지역은 국부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저온작업이 필요할 경우 작업장 부근에 난방실을 설치해야 한다.

6.2.2.2 동계 추운환경 작업장소의 난방온도는 표3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3 동계 작업장소의 난방온도(건구온도)

체력노동강도등급	난방온도(°C)
I	≥18
Ⅱ	≥16
Ⅲ	≥14
IV	≥12

주1: 체력노동강도 등급분류는 GBZ2.2를 참고하고, 그 중에서 I급은 경미한 노동, Ⅱ급은 중간 노동, Ⅲ급은 중노동, IV급은 매우 중노동을 뜻한다.

주2: 작업장소 노동자의 1인당 점용면적이 비교적 크고(50m² ~ 100m²), 노동강도가 I급일 경우 동계 작업장소 난방온도는 10°C까지 낮출 수 있고, Ⅱ급일 경우 7°C까지 낮출 수 있으며, Ⅲ급일 경우 5°C까지 낮출 수 있다.

주3: 실내 발열량이 m³일 경우, 풍속은 >0.3m/s가 되어선 안 된다. 실내 발열량 ≥23W/m³일 경우, 풍속은 >0.5m/s가 되어선 안 된다.

6.2.2.3 난방지역의 생산보조실 동계 실온은 표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 생산보조실의 동계온도

보조실 명칭	기온(°C)
사무실, 휴게실, 취식장소	≥18

욕실, 탈의실, 여성 위생실	≥ 25
화장실, 세면실	≥ 14
주: 공업기업 보조건물의 풍속은 $>0.3\text{m/s}$ 가 되어선 안 된다.	

6.2.2.4 공업건물 난방의 설치, 난방방식의 선택은 GB 50019에 따라 건물규모, 소재지역 기상조건, 에너지원 상황, 에너지원 및 친환경 정책요구에 근거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원칙으로 확정해야 한다.

6.2.2.5 동계 난방 실외온도 $\leq -20^{\circ}\text{C}$ 인 지역은 공장대문이 오랫동안 또는 빈번하게 개방되어 차가운 공기가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관, 외실 또는 열 에어커튼을 설치해야 한다.

6.2.2.6 열풍 난방을 설계한 경우, 강렬한 기류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송풍의 최고온도는 70°C 를 넘지 않아야 하고, 송풍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것을 피하고, 실내 기류는 보통 $0.1\text{m/s} \sim 0.3\text{m/s}$ 이어야 한다.

6.2.2.7 비교적 크거나 대량 습기가 발생하는 공장은 필요한 제습/배수/방조(防潮)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6.2.2.8 공장보호구조는 빗물침투를 방지해야 하고 동계에 난방이 필요한 공장의 경우 보호구조 내의 표면(문과 창문 불포함)은 물기 응결을 방지해야 하고, 특별히 습한 공장공법에서 벽의 물기 응결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三.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사무실은 2006년 8월 16일 《고온혹서기 건축 시공 안전생산작업 강화에 관한 통보》를 공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자의 안전건강을 확보한다.

하나, 시공업체에 작업자에 대한 하기 시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공 현장에 방서(防暑)시설, 보호용품과 방서(防暑)약품을 갖추도록 독촉해야 한다. 둘, 고온기간 시공생산업무를 잘 배정하여 업무횟수와 작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며 최대한 고온 시간대에 노천야외작업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셋, 《건축시공현장환경과 위생표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작업구역, 생활구역의 통풍과 강온(降温)조건을 개선하며, 작업자 숙소, 식당, 화장실, 욕실 등 임시시설이 표준요구에 부합하고 방서강온(防暑降温) 작업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넷, 시공현장의 위생방역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음용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식품변질로 인한 중독사건 발생을 피해야 한다. 하계 쉽게 발병하는 질병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전염병,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중점을 부각시키고 하계 고온안전생산 전문검사를 전개한다.

하계 작업자가 쉽게 피로하고 쉽게 중서(中暑)되고 쉽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특징에 대해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예방하는 전문업무와 결합하여 안전생산검사를 진지하게 전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시공업체는 진지하게 안전생산책임제 등 각종 규정제도를 구체화하고 자체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중서(中暑) 방지, 감전방지, 벼락방지, 식중독방지, 재해방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응급예비안을 완성하고 돌발사건을 즉시 제대로 처리한다.

각급 건설 주관부서는 혹서기간 안전생산 당직과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응급예비안을 더욱 완성하고,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 하며, 고온 혹서기 건축시공안전작업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며 책임을 구체화한다. 각 시공업체에게 응급팀을 설립하도록 독촉하고 책임, 자금, 조치를 구체화하여 고온 혹서기 시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